

제268회 임시회
2008. 3. 14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3. 14(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권광택 의원 외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08년 2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8.3.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새 정부출범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수종 사업 진출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하며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가) 본사,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 정의

2) 투자기업이 대규모 신규투자시 지원근거 마련(안 제33조)

3)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

가)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최영배)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07년 10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 현행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33조의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와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제10호부터 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본사”라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11.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이라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58(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및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 12. “투자기업”이라함은 도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 13. “집단지아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도내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을 “ 제1항 ”으로 하며, 본문중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타 시·도 기업이전 및 도내공장 증설 지원기준(제28조 및 29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시·도 기업	<p>◆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본사 및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 <p><기업부설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3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집단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 -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 업종에 한하여 지원 <p>다만,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업종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p>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도내공장	◆ 도내 소재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
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
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
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
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
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
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
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
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도내
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
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 -----

16. -----

17. -----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삭제> -----

<p>는 <u>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 -----.</p> <p>1~2.(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	--

관련법령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08.1.24, 산업자원고시 제2008-6호)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인 경우
3.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2006.4.28, 2007.4.11>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